

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(변경)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즉시
납세자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영업소)	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	
구분	[] 계좌신고 [] 계좌변경				
	당초		변경		
금융회사					
계좌번호					
변경사유					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신고(변경신고)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(변경신고)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자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은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위임자와의 관계	
	주소			전화번호		
첨부서류	없음				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